

●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 - 162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7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 · 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고자 함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· 법인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

전처장(수입식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

- 주소 : (28159)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
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
- 전화 : 043-719-2168 팩스 : 043-719-2150
- 이메일 : namkung01@korea.kr

※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 『법령·자료 - 입법/행정예고』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3호다목7) 중 “모두 동일한”을 “모두 동일(식품과 축산물의 경우에
는 제품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)한”으로 한다.

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“제품명은 제품명”을 “제품명”으로, “같은 제품
명”을 “동일한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(제조·가공장)·제품명·가
공방법”을 “(제조·가공장)·가공방법”으로 한다.

별표 11 제2호나.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해당 제품
등록취소

별표 11 제4호의 처분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해당 제품
등록취소

별표 13 II 제1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27조,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

별표 13 II 제2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 제29조”
로 하고, 같은 II 제3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
제29조”로 하며, 같은 II 제4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
및 법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II 제11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

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하며, 같은 II 제15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II 제16호의 근거 법령란 중 “법 제29조”를 “법 제27조 및 법 제2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시행한다. 다만, 별표9 제3호, 별표10 제4호 개정규정은 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1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